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수신 회원사 212개사

(경유)

제목 이사회 결의사항(조합원 윤리강령) 제정·시행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합 설립 이래 오랫동안 회원의 의무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불법영업을 영위하거나 조합 및 다른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부 조합원들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조합 이사회에서는 선량한 대다수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 회원 제재 처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불임과 같이 「조합원 윤리강령」을 이사회 결의(제118차 이사회, 2025.10.22.)를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3. 해당 윤리강령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목)부터 시행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불임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 이사회 결의사항 <조합원 윤리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수신자

사업파트 담당자	주임 이가영	책임 박종우	실장 김진석	부이사장 김두환	이사장 박성호
시행	서자대조 25-1610	(2025.10.23)	접수 (		
우	06664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2길 18, 4층(방배동, 서울카렌탈비즈니스센터) / www.scra.or.kr				
전화	(02)525-9082	전송	(02)525-9063	이메일	scra@scra.or.kr / 공개

[붙임]

이사회 결의사항(조합원 윤리강령)

(2025.10.22. 제정)

제1조 (목 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이 정관 제9조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 및 가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조합원(또는 회원)'이라 함은 정관 제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로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 소재한 일반조합원을 말한다.

제3조 (조합원의 기본의무)

- ① 조합원으로서의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진다.
- ② 올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조합원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은 조합 설립목적을 공유하고 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며 조합의 업무방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⑤ 조합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 신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합원 관계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조합원의 중요의무)

- ①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회비를 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④ 법령 및 조합의 설립목적에 반하여 불법·탈법 영업을 하거나 허위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 ⑤ 그밖에 사회상규상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강령은 공포일(2025.10.23.)부터 시행한다.